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김낙년

Working Paper 2017-02

Sep, 2017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5, Bongcheon-ro 31, Kwanak-gu,

Seoul, 151-843, South Korea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김낙년*

<요약>

본고는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보이고자 한다. 첫째, 1소득집중도(예컨대 상위 1% 또는 10%의 소득비중)의 장기추이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실려 있는 한국 데이터(Kim and Kim 2014)를 2015년까지 update하였다. 소득집중도는 해방 후에 크게 떨어진 후 고도성장기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높아지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와 소득집중도가 정체(근로소득의 경우는 하락)하였다. 둘째, 한국, 미국, 일본의 2013년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전체 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에서도 최상층으로 갈수록 미국의 소득 우위가 압도적인 반면 중하위 분위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포를 보였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1분위와 10분위에서는 격차가 컸지만, 2-9분위에서 미국의 60%(PPP기준에서는 80%) 수준으로 나왔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9-10분위에서는 일본에 거의 근접한 반면 그 아래 분위로 가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경제학문헌목록 주제 분류: D3

핵심주제어: 소득집중도, 소득의 분위별 분포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주소: nnkim@dongguk.edu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I. 머리말

본고의 과제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지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실태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하기 어렵다. 통계청 등의 가계조사(『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에서 소득분배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불평등을 과소 평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낙년·김종일 2013). 노동부의 사업체 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후술하듯이 사업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상층의 소득자에서도 적지 않은 누락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과세 자료로 접근하여 소득분배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가계조사나 사업체 조사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고, 이를 보완하는 분배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상위 1%(또는 10%나 0.1% 등)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소득집중도(top income shares)의 장기추이를 검토한다. 이 지표는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의해 상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장기에 걸쳐 일관된 지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현재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에 한국을 포함하여 33개국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의 각 국면에 대응하여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추이했는지를 보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데이터(Kim and Kim 2014)는 2012년까지(그리고 근로소득 집중도는 2010년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2015년까지 update한다. 이 때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할 다른 연구 결과(박명호 2014; 홍민기 2015a, 2015b)가 있는데, 이들 중 큰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개인소득의 분위별 분포를 비교하기로 한다. 위의 소득집중도가 상위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전체 계층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런데 근로소득의 국제비교에는 OECD의 분위별 분포(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거기에 제공된 한국과 일본의 통계는 사업체 조사 결과이지만, 후술하듯이 조사 대상이나 임금의 포괄 범위에서 차이가 크다. 미국은 사업체 조사가 아니라 가계조사(CPS)에 의거하고 있다. 즉 OECD가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임금 통계는 일관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들 3국을 대상으로 2013년의 근로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의 분위별 분포를 보이게 한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 분포에 관해 좀더 엄밀한 국제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 절이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상위 소득에 한정된 대신에 장기추이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절에서는 최근의 시기로 한정하는 대신 소득의 계층별 분포 실태를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뒤이은 Ⅱ절과 Ⅲ절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각각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Ⅳ절에서는 이상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요약 정리하고, 남겨진 과제를 언급하기로 한다.

Ⅱ. 소득집중도의 장기추이

1) 소득집중도(Kim and Kim 2014)의 update

소득집중도는 상위 $x\%$ 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분자)을 전체 소득(분모)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전체 인원수는 보통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상위 1%의 소득집중도란 소득이 높은 순으로 성인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분모인 전체 소득은 과세자료에서 구하지 못할 경우 국민계정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가계에 귀속되는 소득을 추출한다¹. 분자의 상위 $x\%$ 에 속하는 자들의 소득은 소득세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과세 자료가 모든 소득자를 커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상위 1%나 10%의 소득을 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소득세 통계는 원 자료가 아니라 통상 소득구간별로 인원수와 소득금액을 집계한 표로 제시된다. 이를 이용할 경우 예컨대 상위 1%에 해당하는 자가 속하는 소득구간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그 구간 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이때 Pareto interpolation이나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을 적용하여 상위 $x\%$ 의 소득집중도를 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근로소득의 집중도를 구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체 인원수를 성인 인구 대신에 근로자수로 바꾸고, 전체 소득도 국민계정의 근로소득으로 대체하면 된다. 한국의 전체 소득과 근로소득의 각 집중도는 김낙년(2012a; 2012b)이 추계한 바 있고, WID의 한국 데이터(Kim and Kim 2014)로 실려 있다. 이제 이를 update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자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가 2008년 SNA로 이행하게 되면서 1953년 이후 가계소득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 둘째, 2000년대 이후 통계청의 인구통계도 다소 수정되었다. 셋째, 소득세 자료가 보다 충실해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전체 소득(control total)을 국민계정에 의거하던 것을 소득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소득집중도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다른 자료(즉 소득세와 국민계정 통계)에서 가져오던 것을 모두 소득세 자료에 의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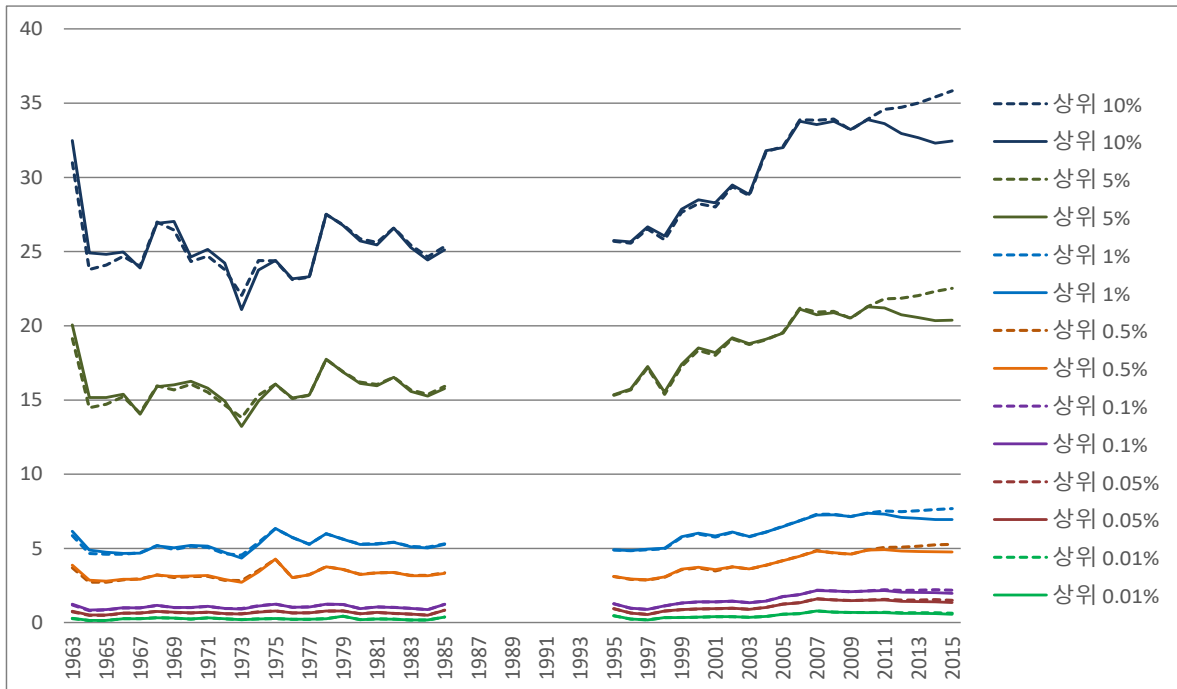
첫째와 둘째의 통계를 update하면 기존의 소득집중도 계열이 미미하지만 수정된다. 이에 대해 셋째 요인을 반영할 경우 최근의 소득집중도 추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좀더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¹ 국민계정의 가계소득 중에는 통상의 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추정하여 공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가주택의 귀속 임대료와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중개서비스(FISIM)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는 2008년 이전에는 과세자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과세 미달자에 관한 정보도 싣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과세자와 과세 미달자)와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급여와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고용주가 신고한 임금 및 급여는 고용주에게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가사도우미와 같이 가계가 고용한 경우 그 인건비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과세자료에서 파악된 근로소득 총액은 취업한 근로자가 얻는 소득보다 더 크다. 과세자료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015년에 2,546만 명이며 근로자수(1,923만 명)보다 더 많다. 그 차이는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의 실적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사에서 취업자란 조사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정의되는데 비해, 과세 자료에서는 1년 중 한번이라도 소득이 발행하면 모두 파악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집중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에서 파악된 근로소득 중에서 비취업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용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비취업자일 확률이 높다고 보아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의 소득을 추정하여 공제하였다².

<그림 1> 근로소득의 집중도(%): 기존 추계 vs. update 버전



주 1) 점선은 기존 추계와 그 방식을 연장한 것이고, 실선은 update된 계열이다.

² 2008년 이전에는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를 전체 근로소득으로 보았는데, 그 중에도 비취업자의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 비율을 알 수 없다. 여기서는 2009년에 파악된 동 비율(7.4%)을 그 이전의 모든 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2) 그래프와 범례의 순서가 대응하도록 맞추었다.

자료: 부표 1; Kim and Kim(2014).

그림 1은 전체 근로자수와 그들에 귀속되는 전체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상위 x%의 소득비율을 보인 것이다. 점선은 기존 추계이고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를 분모로 이용하는 종래의 방식을 2015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선은 2009년 이후 분모를 소득세 자료에서 파악된 임금 및 급여 총액으로 대체한 것이다. 2008년 이전의 점선과 실선 간에 나타난 미미한 차이는 전술한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가 2008년 SNA로 update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2010년대에 들어와 상위 x%의 소득집중도가 점선의 경우는 계속 상승한 반면, 실선은 반대로 하락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왔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고,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파악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얼마나 실태를 반영하고 있을까? 그림 2는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 이외에도 명목 임금총액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각종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³. 거기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2010년 이후 국민계정의 임금총액 증가율이 소득세 자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나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비교하더라도 국민계정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009년 이전에는 국민계정의 임금총액 증가율이 다른 조사보다 높은 때도 있지만 낮은 때도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2010년 이후는 국민계정의 과소 파악의 편향이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소득세 자료로 파악된 근로소득은 2009년에 국민계정의 근로소득(임금 및 급여)에 비해 5% 적었지만, 격차가 점차 줄다가 역전되어 2015년에는 거꾸로 5%가 많아졌다. 소득세 자료의 수치는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신고되어 국세청에서 과세(또는 면세) 대상이 된 소득이며 전수가 집계된 것이다. 더구나 신고 누락이 있음을 감안할 때 소득의 파악 범위가 가장 넓은 국민계정의 수치가 당연히 소득세 자료보다 많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5% 적다는 것은 국민계정의 임금 및 급여가 현재 상당히 과소하게 파악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편향이 2010년대에 들어와 매년 누적되어 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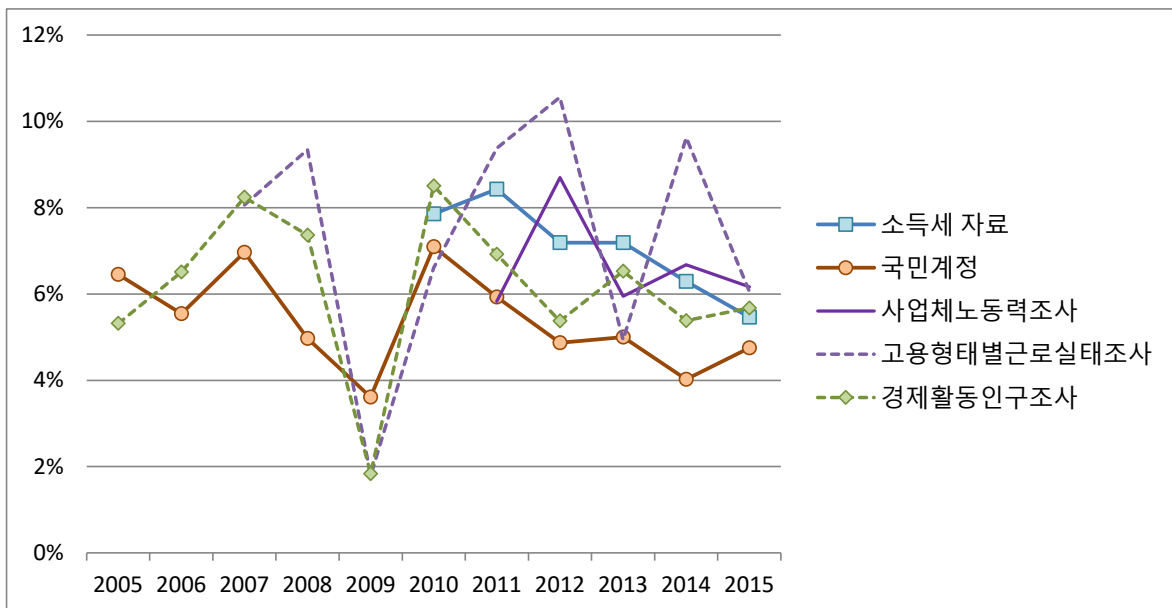
그림 1에서 2010년대에 들어와 점선의 근로소득 집중도가 계속 증가한 것은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분자에 비해 분모로 사용된 국민계정 근로소득이 과소하게 파악되었고, 그러한 편향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실선은 집중도 계산에 이용된 분자와 분모 모두가 동일한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고 있어 두 자료 간의 비 일관성은 없으며 그로 인한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실선이 점선보다 실태에 가까울 것으로 볼 수 있다. update된 상위 x%의 소득집중도와 경

³ 소득세 자료나 국민계정은 근로소득의 총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직접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조사는 임금과 종사자수의 증가율로부터 임금총액 증가율을 구했는데, 임금과 종사자수의 조사 범위에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각각 조사하였다. 종사자수에서는 두 조사가 각각 1인 이상과 5인 이상 사업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매년 3월과 8월의 임금을 조사(여기서는 8월 임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의 범위에서 보면 통계청의 조사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소득 및 평균소득은 부표 1에 제시하였다.

그러면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사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의 집중도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소득집중도의 분자에 해당하는 상위 x%에 속하는 소득은 소득세 자료에서 구한다. 개인이 수취하는 각종 소득의 합산 금액은 종합소득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일정액을 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의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 소득자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자료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 등을 통합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⁴.

<그림 2> 명목 임금총액의 증가율 비교



주: 1) 소득세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구한 근로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합계)의 증가율이다.

2) 국민계정은 한국은행의 임금 및 급여의 증가율이다

3) 나머지는 각 조사의 임금상승률과 고용증가율로부터 구한 임금총액 증가율이다.

$$\text{임금총액증가율} = \text{임금상승율} + \text{고용증가율} + \text{임금상승율} * \text{고용증가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ECOS;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⁴ 구체적인 방법은 김낙년(2012a: 78-93)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가지 부연하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통합할 때 두 자료에 중복해서 나오는 근로소득자를 추산하여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료상황이 유사한데, 김낙년(2012a: 87)은 Moriguchi and Saez(2008)가 일본에 적용한 방법을 한국에 원용하여 이를 추정할 바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부 시기(2007-2012년)에 대해 두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통합소득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 통합소득을 이용해서 구한 소득집중도는 김낙년(2012a)의 방법으로 구한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예컨대 2012년에 상위 1%의 소득비중은 11.7%로 동일, 상위 10%의 경우는 43.0%와 42.6%). 여기서는 김낙년(2012a)의 방법이 결과를 크게 왜곡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시기와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였다.

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집중도의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소득은 종래에 국민계정에서 가계에 귀속되는 소득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전술한 근로소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분모도 가능한 한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국민계정의 가계소득은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국민계정의 소득항목 중에서 임금 및 급여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하 동일),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영업잉여, 임료, 준법인기업의 소득인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전술한 과소 파악의 편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010년 이후의 근로소득이 그림 2의 국민계정 자료의 증가율이 아니고 그 보다 높은 소득세 자료의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정하였다.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자료에서 그 총액을 구할 수 있다. 국민계정의 이자 소득에는 금융중개서비스(FISIM)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정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구한 이자는 소득세 자료의 이자와 거의 일치한다. 배당소득도 두 자료의 수치에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국민계정의 금융소득이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국민계정 자료를 소득세 자료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원천 징수되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기타소득 중에도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소득세 자료가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미신고 소득도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세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 총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국민계정 통계에 의존하기로 한다. 국민계정에서 영업잉여, 임료,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이라는 항목이 가계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잉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는 통상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여 공제할 필요가 있다⁵.

이상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의 합계를 전체소득(분모)으로 하고, 20세 이상 인구수를 전체 인원수로 하여 소득집중도를 구했다. 그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점선은 기존의 추계치(Kim and Kim 2014)이다. 단 2013-15년은 전체소득을 종래와 같이 국민계정 통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선은 update된 계열이다. 2009년 이전에 나타나는 점선과 실선의 괴리는 국민소득 계정이 2008년 SNA로 이행한 것과 2000년대 이후 인구 통계의 수정이 반영되어 있다⁶. 2010년 이후에는 거기에 소득세 자료의 정보를 반영하여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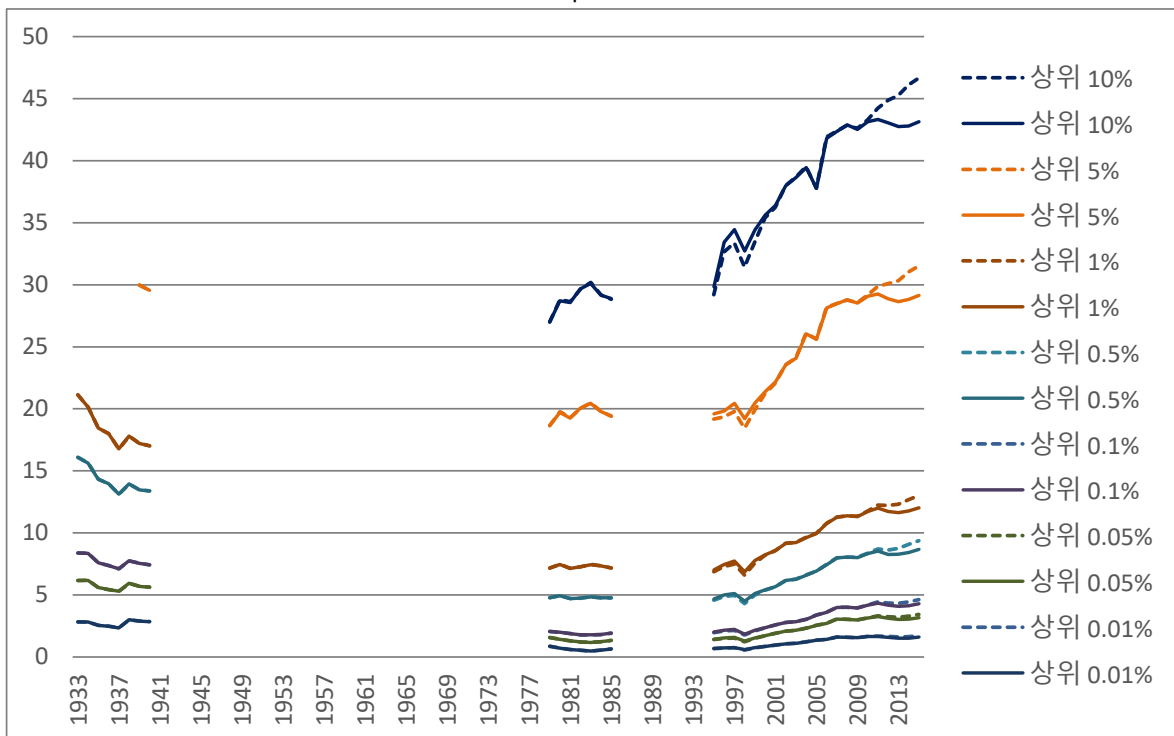
⁵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주거서비스의 영업잉여를 구할 수 있고, 주택센서스의 자가 및 임대 주택 비율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실제와 귀속 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

⁶ 그림 3에 따르면 점선과 실선의 갭이 특히 1990년대에 다소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국민계정의 신규 버전을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지만, 특히 이자소득이 크게 줄어든 대신에 2008년 SNA에서 새로 등장한 투자소득지급 항목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후자는 보험회사 등이 운영한 투자자금의 수익으로서 장차 가계로 귀속될 것이지만, 당해 연도의 가계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이를 조정한 결과 이 시기의 가계소득이 줄었고, 분모가 줄어든 만큼 신 버전의 소득집중도(즉 실선)가 더 높아졌다.

소득이 수정된 효과가 추가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점선의 소득집중도는 2010년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선에 따르면 소득집중도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의 차이는 국민계정의 근로소득이 과소하게 파악되는 편향이 2010년 이후 누적되어 온 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update된 전체소득으로 구한 상위 x%의 소득 집중도와 경계소득 및 평균소득은 부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전체소득의 집중도: 기존 추계 vs. update 버전



주 1) 점선은 기존 추계와 그 방식을 연장한 것이고, 실선은 update된 계열이다.

2) 그래프와 범례의 순서가 대응하도록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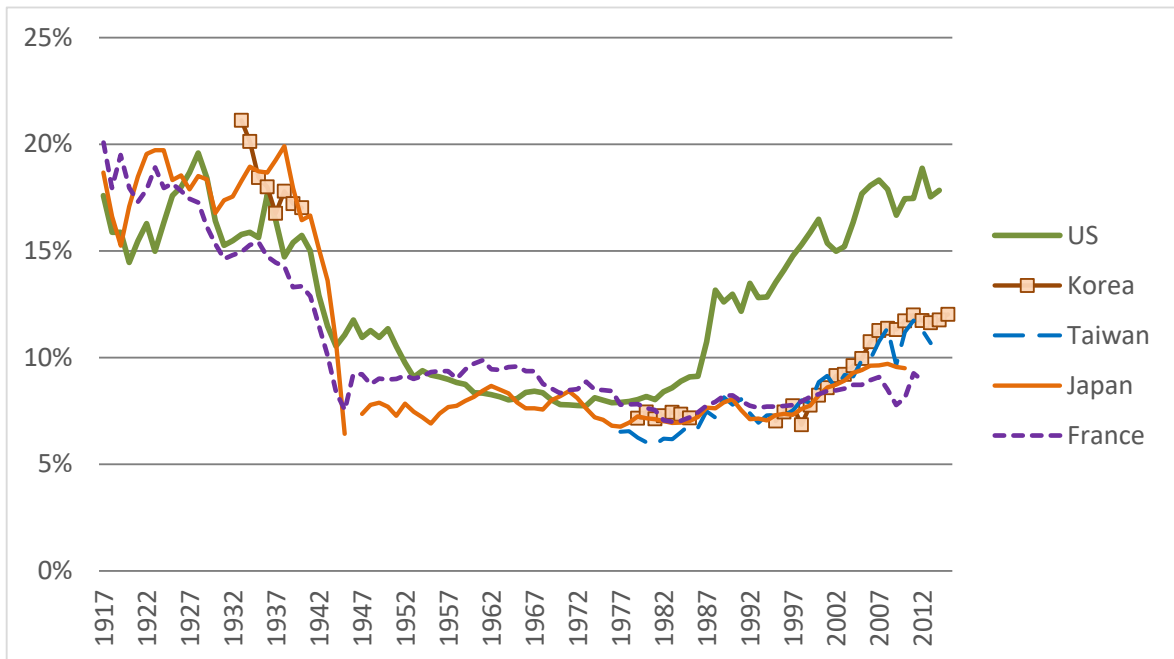
자료: 부표 2; Kim and Kim(2014).

그림 4는 이 중에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이다. 자료상의 제약으로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한국 데이터가 공백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의 집중도(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소득집중도가 매우 높았다가 전후 급속히 떨어진 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1980년대 이후 분화가 나타났다. 미국(또는 그래프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영미형 국가)은 소득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져 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일본이나 프랑스(또는 유럽 국가)는 소득집중도가 근래에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전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보다 늦은 1990년대 말부터 소득

집중도가 급속히 높아져 현재 두 유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추계된 계열이 짧지만, 근래에 한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소득불평등의 장기추이를 보면 U자형의 세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면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이질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면은 일본인이 철수하고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계층간 이질성이 크게 완화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기 소득집중도가 크게 떨어져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전시 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본소득의 격감과 근로소득 내부의 격차 축소에 기인한 것이며, 그 배후에 작용한 요인은 우리나라와 달랐다. 해방 후 이러한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의 지속으로 인해 성장효과가 저변으로 널리 확산되는 등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림 4 상위 1%의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



주: 한국의 해방 전 통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료: WID, 단 한국은 부표 2의 update된 결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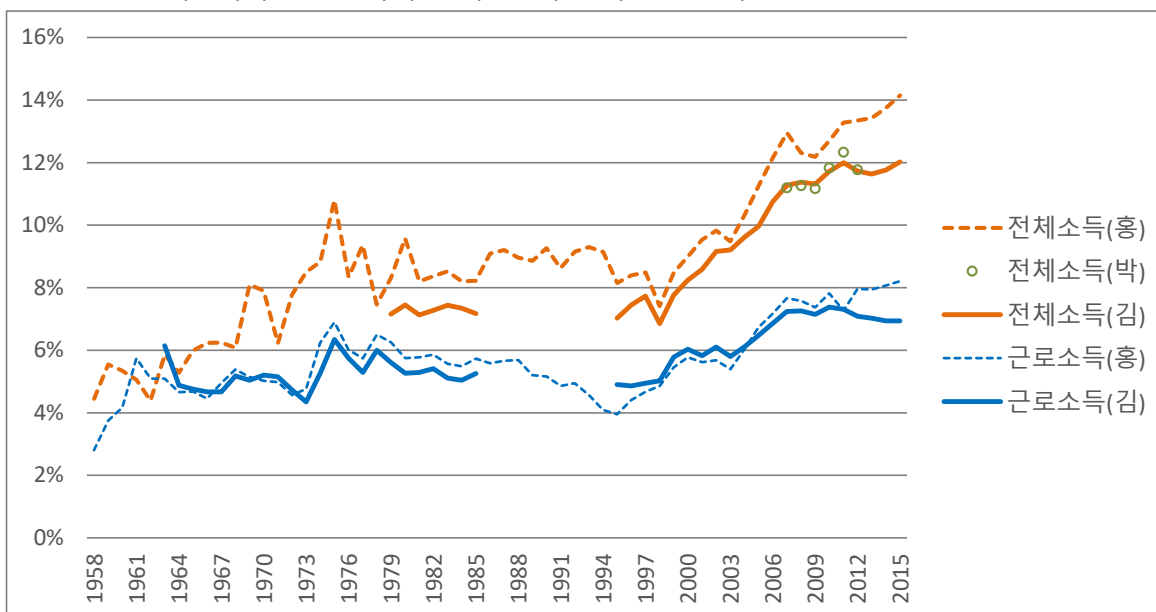
그렇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저성장 단계로 들어서면서 소득집중도가 다시 급속히 확대되는 셋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포함한 세계화의 진전,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BTC)로 나타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증가의 둔화와 소득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다. 성장의 효과가 저변으로 파급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을 가져온 기업경영 시스템의 변화와 과세체계의 누진성을 후퇴시킨 조세정책도 최상층으로 소득집중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낙년 2014a).

2) 다른 추계에 대한 검토

그런데 소득집중도에 관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며, 그 중에는 본고와 큰 차이를 보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 5는 전체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박명호(2014)는 2007-2012년에 대해 전체소득의 집중도를 추정하였다. 본고보다 소득구간이 훨씬 세분된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고,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중복을 배제한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점에서는 본고보다 더 나은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득집중도의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소득에서는 미미한 차이가 있다. 본고가 국세청이 파악한 비과세소득도 전체소득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그는 그것이 모든 비과세소득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 본고는 가계부문의 이자소득(원천)에서 공제 항목인 금융중개서비스(FISIM)를 빼서 구했지만, 그는 『국세통계연보』의 이자소득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문의 이자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한 이자소득에 추정된 금융중개서비스를 더해서 구하기 때문에 두 방법은 사실상 동일하다. 그는 매년의 전체소득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2007-2009년간은 본고와 차이가 미미(비과세소득의 경우 전체소득의 0.58% 정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2010-12년은 본고가 전술한 근로소득의 과소 파악을 보정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그림 5> 전체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위 1%의 소득집중도 비교



자료: 부표 1, 2; 박명호(2014); 홍민기(2015a; 2015b).

그가 차별화한 것으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interpolation의 방법이다. 김낙년(2012a)이나 본고가 소득구간을 분할할 때 Pareto interpolation의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먼저 상위 구간의 소득분포가 Pareto 분포로 잘 근사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그것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소득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Pareto 분포가 검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이 우위에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후자도 소득구간 내의 인원수 분포가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그보다 낮은 왼쪽 구간의 인원수가 그보다 높은 오른쪽 구간에 비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의 분포는 구간 내 좌우의 분포가 달라지는 곳이 반드시 평균점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곳이 평균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가 연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mean split histogram은 이를 매우 단순화한 형태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interpolation의 방법은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방법으로 얻은 결과가 통상 미미한 차이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구간이 상당히 크게 벌어진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두 방법의 정확도가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득집중도를 추정한 연구들을 보면 두 방법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림 5에도 보듯이 본고와 박명호(2014)의 상위 1% 집중도의 추정결과는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소득구간이 훨씬 세분되어 있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미 통합된 소득이므로 중복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추정이 필요 없으며, Pareto interpolation이 아니라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차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된 소득집중도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강조한 자료나 방법의 차이가 실제로는 추정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홍민기(2015a; 2015b)는 근로소득과 전체소득의 집중도를 모두 추정하였는데, 그 수준이나 추이에서 본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추이가 엇갈리게 나타난 것은 전술했듯이 본고가 국민계정 근로소득의 과소 편향을 보정하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전체소득의 집중도를 보면 추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 수준에서도 전체 시기에 걸쳐서 본고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가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소득을 과소하게 추정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소득 개념을 잘못 설정한 데 기인한다. 그는 전체소득을 가계 부문의 순본원소득잔액(NNI)에서 공제 항목(고용주의 사회부담금, 자가 주택의 귀속 임대료, 금융중개서비스, 투자소득지급, 현물급여)을 빼는 방법으로 구했다. 그런데 가계 부문의 NNI란 소득의 원천(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에서 소득의 사용(재산소득)을 공제한 것인데, 여기서 공제된 재산소득이란 가계가 지급한 이자를 말한다. 통상 이자소득이라고 할 때 수취한 이자를 말하지 거기에서 지급한 이자를 뺀 순 이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가 정의한 분모의 전체소득은 가계가 지급한 이자만큼 과소하게⁸ 설정되어 있는 반면, 분자에 해당하는 상위 x%의 소득에는 그렇지 않다. 즉 분자와 분모의

⁷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Table 4)에 의하면 많은 나라가 Pareto interpolation에 따랐지만,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에 따른 나라도 적지 않았다. WID에 실린 이들 국가의 데이터는 어느 interpolation의 방법에 따랐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다.

⁸ 예컨대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0년 가계의 이자소득(원천)은 49조원이고 이자소득(사용)은 45조인데, 양쪽에 모두 금융중개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식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지급이자(45조원)만큼 과소하게 파악된다. 더구나 거기에서 다시 금융중개서비스(그의 추정에 따르면 8조원)도 공

소득 범위가 서로 조응하지 않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산출한 소득집중도가 왜곡되었던 것이다.

그가 공제한 항목 중에서 선행 연구(김낙년 2012a; 박명호 2014)와 다른 것은 현물 급여를 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그는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의거하여 노동비용 중의 일부(예컨대 자녀의 학비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자료에서 포착되지만, 나머지 노동비용(부정기적인 식사나 교통 비용 지원 또는 휴양 시설 유지, 교육훈련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계정에서 현물 급여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 파악된 노동비용의 각 항목이 국민계정에서는 모두 소득으로 파악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비용 중에서 그 혜택이 특정된 개인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민계정에서는 대체로 중간소비로 분류된다. 소득세 자료든 국민계정이든 노동비용 중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포착하는데 차이가 없으며,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민계정에서도 대부분 중간소비로 파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두 자료의 소득의 범위는 그가 상정하듯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따라서 국민계정에서 그가 현물 급여라고 생각한 것을 공제한 것은 분모의 전체소득을 과소하게 산정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다¹⁰.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본고에 비해 1958년까지 소급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자료가 없는 1986-94년뿐만 아니라¹¹, 종합소득세가 실시(1975년)되기 이전 시기에 대해서도 소득집중도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소득 집중도가 1975년까지 급등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확대가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도 나타났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추이가 사실일까?

이 추정 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은 종합소득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기에 전체소득의 집중도를 어떻게 구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시기는 분리과세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득원이 여럿 있을 경우 개인별로 통합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의 각 소득구간별 통계를 단순 집계하고, 그로부터 소득집중도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3개 소득을 각각 100만원씩 번 개인이 있을 경우 그의 소득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번 3명의 소득자로 파악된다. 이것은 소득집중도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추정한다. 즉

제해야 하므로 그의 이자소득은 -4조원(=49-45-8), 즉 마이너스가 되는 모순에 빠진다. 그는 NNI에는 지급이자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⁹ 공제 항목 중에서 투자소득지급은 국민계정 통계가 2008년 SNA로 이행하면서 새로 등장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것은 그 이전의 국민계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중개 서비스와 귀속임대료의 추정에서도 오차가 생기고 있다. 예컨대 금융중개서비스를 추정할 때 그는 실제의 이자소득이 소득세 자료에서 파악된 이자소득의 1.15배로 가정하였지만, 한국은행은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

¹⁰ 홍민기(2015: 7)는 현물 급여와 다른 공제 항목의 합계가 N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로 나왔고, 1995-2013년에 걸쳐 이 비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의 전체소득도 NNI의 20%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낙년(2012a)의 동 비율은 11-12%로 낮게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그의 소득 정의에 포함된 전술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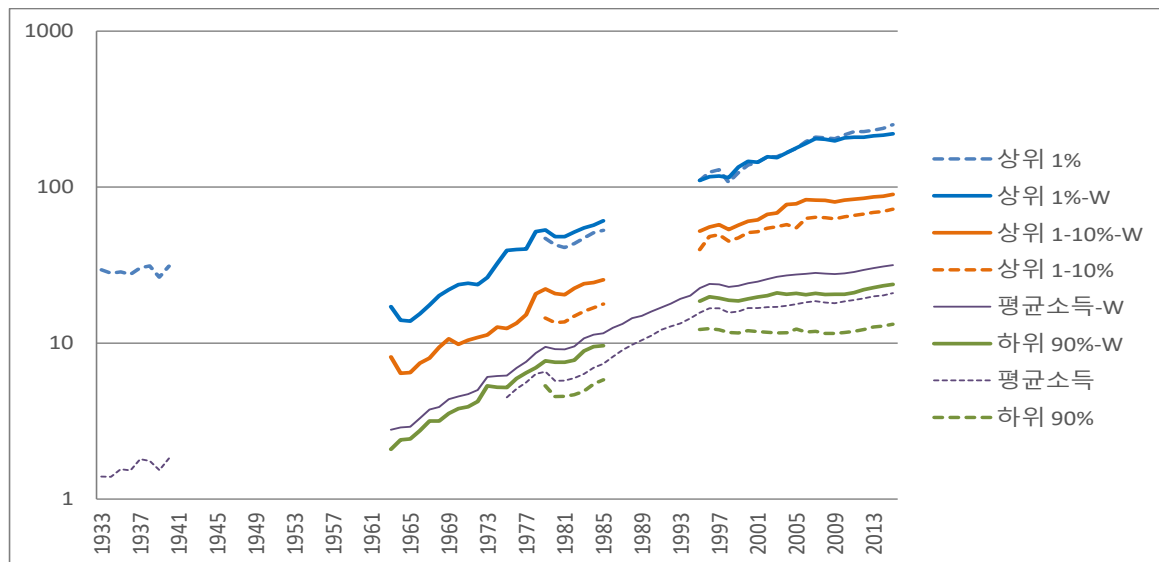
¹¹ 이 시기의 소득집중도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정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의 추계가 고도성장기에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된 것으로 나온 것은 자료를 잘못 이용한 결과일 뿐이며 실태를 왜곡한 것이다¹². 김낙년(2012a)이나 본고가 종합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은 시기에 대해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3) 소득 그룹별 실질 소득의 장기추이

여기서는 소득 그룹별로 실질 소득이 장기에 걸쳐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간단히 보이고자 한다. 이 때 소득 그룹을 상위 1%, 상위 1-10%, 그리고 하위 90%로 나누고, 각 그룹의 평균소득을 비교하기로 한다. 그림 6은 전체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평균소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각각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체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위 x%란 각각 20세 이상 성인인구와 근로자수 대비로 구한 것이다. 기준이 다르지만 각 그룹의 소득 추이를 보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림에서 실선과 점선이 거의 평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료의 제약으로 점선이 결락된 시기는 실선의 추이로 추측(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해 볼 수 있다.

그림 6 소득 그룹별 평균소득: 근로소득과 전체소득



주: 1) W를 붙인 실선은 근로소득, 점선은 전체소득을 각각 나타낸다. 범례의 순서는 소득 순위

¹² 그런데 이 시기 집중도가 급등한 것은 왜일까? 종합소득세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1969년부터 연소득 500만원을 넘는 최상층 소득자에 한정해서 합산한 소득에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3년에 그 한도를 300만원으로 낮추었고, 1975년에 종합소득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 한도가 없어졌다. 이 시기는 인플레이와 함께 명목소득이 급등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는 자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그의 소득집중도가 계속 상승하고 특히 1969, 1973, 1975년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실태와는 무관하며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그림 5에서 보이듯이 이 시기 그의 전체소득 집중도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집중도는 그렇지 않아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전체소득에 대해 전술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 2) Y축은 소득금액(단위: 100만원, 2015년 불변가격)이고, 로그 눈금이다.
- 3) 해방 전은 한반도 전체를 말하고, 거기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소득도 포함한다.

자료: 부표 1, 2.

평균소득의 추이를 보면, 고도성장기에는 모든 그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고도성장기 각 그룹의 평균소득이 거의 같은 기율기로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말부터는 그룹에 따라 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룹은 이전의 증가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하위 90%의 소득은 정체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성장도 빨랐고 분배도 양호했지만 그 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불평등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그룹의 소득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위 90%의 그룹의 소득도 완만하지만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해방 전은 전체소득의 상위 1%와 평균소득만 제시되어 있지만, 양자의 갭이 1960년대 이후에 비해 상당히 컸다는 것으로부터 불평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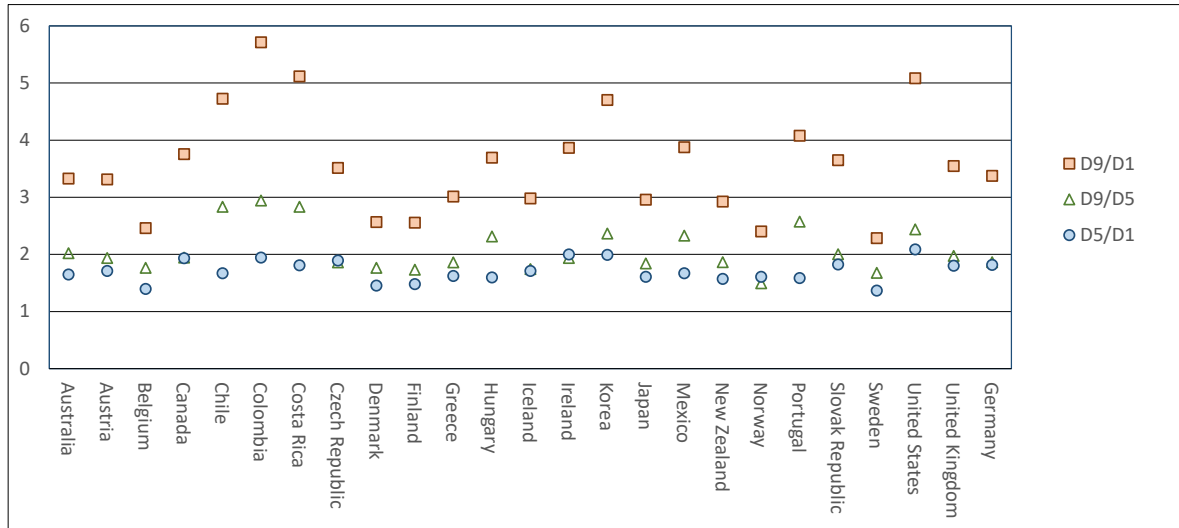
Ⅲ. 근로소득 분포의 한미일 비교

앞 절에서 고찰한 소득집중도는 상위 10%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위 90%의 실태를 들여다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에 한정하는 대신에 하위를 포함한 개인소득의 전체 분포를 살펴보고¹³, 이를 국제 비교하기로 한다.

근로소득 분포에 관해서는 OECD가 수집한 각국 임금의 10분위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들이 대상으로 한 것은 전일제의 근로자(full time dependent employees)이며, 이들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고, D5/D1, D9/D5, D9/D1의 각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Dx란 x분위의 상한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D1과 D9는 각각 1분위와 9분위의 상한(이것은 또는 2분위와 10분위의 하한)이 되고, D5는 전체 소득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median)이 된다. 그림 7은 이들 각 분위별 소득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D9/D1의 지표를 보면, 일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5.1배)과 한국(4.7배)이 높은 편이며, 일본(3.0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D5/D1과 D9/D5는 D9/D1을 중위소득(D5)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것인데, 각각의 부분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국가간 순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¹³ 2009년 이후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 미달자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신고가 면제된 각종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도 실고 있다. 이들 각종 소득을 합치면 국민계정의 가계소득에 근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낙년(2016)은 2010년 시점에서 이들을 통합하여 개인소득의 전체분포를 추정할 바 있다. 다만 이 작업에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중복되거나 누락된 소득을 추정할 때 가정에 의거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림 7 근로소득의 분위별 비율(2013년)



OECD, "do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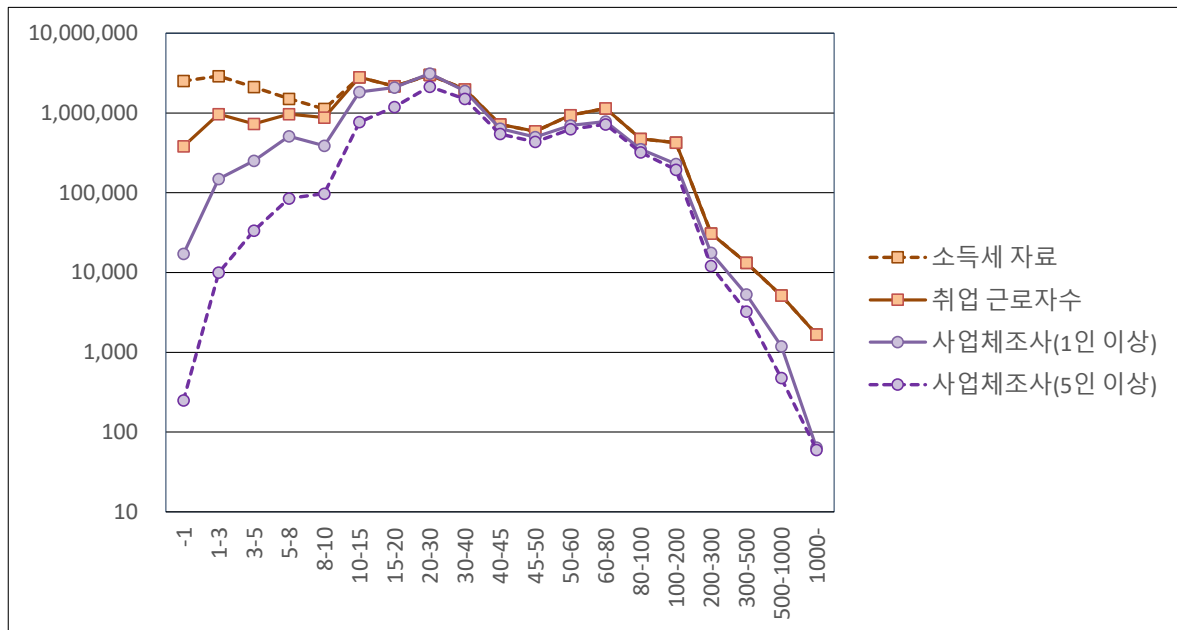
그런데 이 수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먼저 각국이 제공한 임금 자료가 얼마나 비교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한국의 경우는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거한 것이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사 임금의 범위는 초과근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것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조사(『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의거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크다. 즉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근로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임금도 정규의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초과근로수당과 특별 상여금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LS의 가계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의거한 것이며, 16세 이상의 전일제(full time)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 근로자나 임금의 조사대상과 기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분위 소득을 구할 때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한국의 경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8은 2013년 사업체조사에 의거하여 5인과 1인 이상의 각 사업체의 근로자수의 분포를 소득구간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와 함께 국세청에 의해 파악된 근로소득자의 분포도 제시하였다. 전체 근로소득자수는 2,444만명, 취업한 근로자수는 1,820만명, 1인 이상과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각각 1,347만명과 868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가 없지만, 국세청이 파악한 전체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일용근로소득자는 취업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아 이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했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할 경우 근로자수의 절반 이상이 배제됨을 알 수 있다. 범위가 좁혀질수록 하위 소득자가 배제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상위 소득자도 포착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연소득 2억 이상의 경우 소득세 자료에서는 50,918명이 잡히는데 5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에서는 15,873명(1인 이상 사업체는 24,299명)이 포착되는데 불과하

다. 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의 분포를 보이고자 할 경우 영세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나 불완전 취업자가 다수 배제될 뿐만 아니라 상위 소득구간에서도 적지 않은 누락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 사업체조사가 임금구조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어 왔는데, 조사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소득의 분포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각 조사가 파악한 근로자의 소득구간별 분포 (2013년)



주: X축은 소득구간(단위: 백만 원), Y축은 로그눈금으로 표시한 근로자수(단위: 명).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마이크로 데이터);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런데 전술한 OECD 자료에서 한국은 1인 이상 사업체, 일본은 10인 이상 사업체를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가계조사로 파악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예컨대 1분위의 소득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미국은 낮게 나왔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금에서도 한국의 조사에서는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이나 보너스가 일본에서는 제외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엄밀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임금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세 자료로 접근하기로 한다. 한국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이용한다. 일본의 경우도 국세청의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結果』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1년 이상 근속자와 그 미만인 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나라 모두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 및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 자료는 이에 의거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세단위가 부부의 경우는 합산하여 하나의 tax

unit이 되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국이나 일본과 차이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가 원천 징수한 과세 자료가 IRS에 의해 W-2 양식으로 공표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단위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하다. 현재 세 나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것은 2009-2013년의 5개년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가장 최근인 2013년을 비교하기로 한다.

각국의 과세 당국이 파악한 근로소득자수를 취업 근로자수와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다. 그것은 한국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 자료는 한 해 동안 한번이라도 소득을 얻은 실적이 있으면 모두 파악되지만, 취업자는 조사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각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일본은 노동력조사, 미국은 CPS)에서 파악된 취업한 근로자수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각국 모두 취업자의 정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관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분위 분포를 구할 때 소득세 자료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취업한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자와 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추정하여 제외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최하위 소득구간에서 초과한 인원수와 소득(그들의 소득은 해당 구간의 평균소득으로 가정)를 비 취업자로 보아 제외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공무원이 빠져 있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이를 조정하지 못했다.

이들 근로소득자 중에는 전일제(full time) 근로자 이외에도 part time 근로자들이나 중도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⁴. 그로 인해 하위 분위로 가면 이러한 근로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전술한 OECD 자료가 전일제 근로자로 한정된 것과 차이가 있지만,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세 나라에 적용된 근로자의 범위가 동일하다. 소득의 기준에서도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과근로수당이나 보너스의 포함 여부와 같은 OECD 통계에 나타난 문제는 없다.

소득구간별 인원수와 소득금액 통계를 10분위로 나누기 위해서는 interpolation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mean split histogram의 방법에 따랐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Atkinson 2005: 333; 김낙년 2014b: 66-69)를 참조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1이 그것인데, 근로자를 10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에 들기 위한 경계소득,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소득 비중, 그리고 전체 근로자수와 그들의 평균소득도 제시하였다. 10분위는 다시 나누어 상위 10-5%에서 상위 0.01%까지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각 분위의 소득 구성비에서 10분위의 비중은 한국, 일본, 미국이 각각 32.7%, 28.2%, 37.5%로 나와 미국>한국>일본의 순으로 높았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¹⁵를 보면, 각각 7.2%, 6.2%, 12.4%로 나와 미국의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세 나라의 분위별 구성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의 분위기를 음영으로 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은 8-9분위, 일본은 1-7분위, 미국은 10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10분위를 다시 세분할 경우 한국은 상위 10-5%에서 높았지만, 그 이상의 분위에서는 미국이 높았다. 미국은 최상위로 갈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하위 구간의 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한국은 그 중간에

¹⁴ 일본의 경우 1년 근속자와 1년 미만 근속자를 구분한 통계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세 나라 모두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¹⁵ 상위 1%의 소득비중은 표 1에서 상위 1-0.5%에서 상위 0.01%까지의 합계로 구한다.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근로소득의 분위별 경계소득, 평균소득, 소득비중(2013년)

	경계소득			평균소득			분위별 소득비중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천 원	천 엔	달러	천 원	천 엔	달러	%		
1분위				2,134	422	4,324	0.72	1.11	0.94
2분위	4,383	774	7,540	7,167	1,060	10,290	2.41	2.78	2.23
3분위	9,724	1,335	13,051	11,219	1,658	15,967	3.77	4.34	3.46
4분위	12,752	2,011	18,881	14,529	2,325	21,879	4.89	6.09	4.74
5분위	16,387	2,629	24,941	18,512	2,919	28,205	6.23	7.65	6.11
6분위	20,850	3,219	31,627	23,480	3,531	35,349	7.90	9.25	7.66
7분위	26,474	3,843	39,366	30,160	4,182	43,853	10.14	10.96	9.50
8분위	34,007	4,552	48,851	39,201	5,021	55,060	13.18	13.16	11.93
9분위	45,241	5,538	61,921	53,837	6,280	73,682	18.11	16.46	15.96
10분위	64,279	7,256	88,057	97,091	10,758	173,108	32.65	28.20	37.49
상위 10-5%	64,279	7,256	88,057	71,946	8,038	102,229	12.10	10.53	11.07
상위 5-1%	82,027	9,054	119,650	98,928	10,957	161,998	13.31	11.49	14.03
상위 1-0.5%	122,689	14,845	260,632	140,268	16,491	298,815	2.36	2.16	3.24
상위 0.5-0.1%	171,027	18,702	388,647	211,965	23,881	532,391	2.85	2.50	4.61
상위 0.1-0.05%	317,269	33,965	894,537	363,755	38,944	1,047,330	0.61	0.51	1.13
상위 0.05-0.01%	441,784	45,278	1,293,293	599,566	58,822	1,928,312	0.81	0.62	1.67
상위 0.01%	972,583	86,987	3,450,797	1,838,221	146,603	8,008,481	0.62	0.38	1.73
	전체 근로자수(천 명)			전체 평균소득			합계		
	18,195	52,436	134,421	29,733	3,815	46,172	100.00	100.00	100.00

주: 1) 전체 근로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median)은 6분위의 경계소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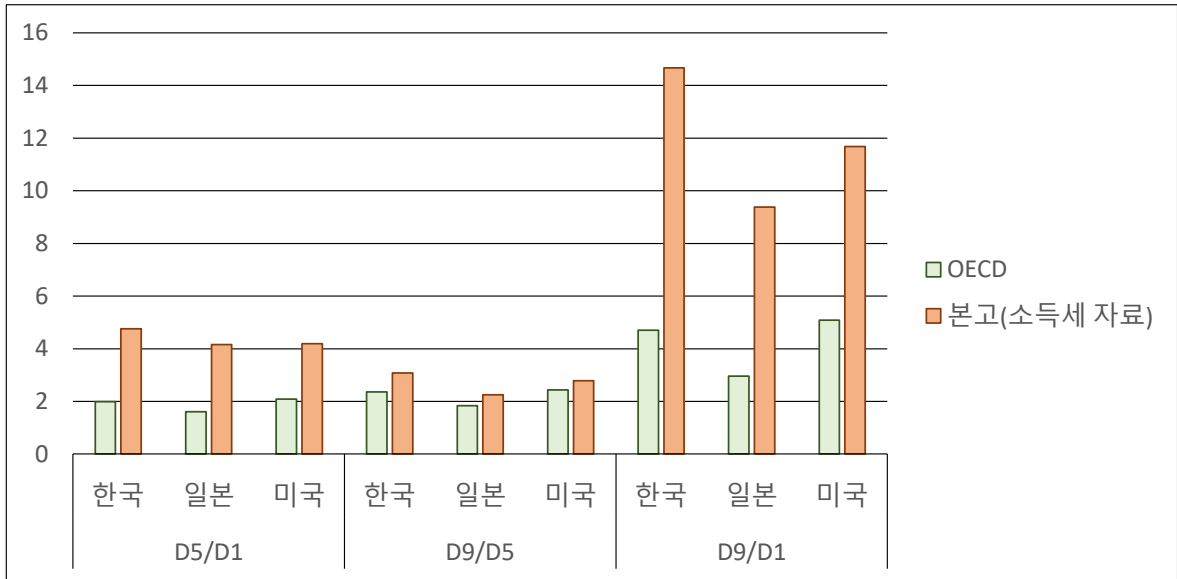
2) 분위별 구성비에서 음영을 넣은 것은 3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료: 한국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4년)의 표 4-2-4, 표4-4-10; 일본은 国税庁,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結果』; 미국은 IRS, "SOI Tax Statistics".

그리고 분위별 경계소득에 따르면, 한국, 일본, 미국은 연소득이 각각 6,428만 원, 726만 엔, 8만 8천 달러를 넘어야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에 들 수 있다.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각각 1억 2,269만 원, 1,485만 엔, 26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각각 2,085만 원, 322만 엔, 31,627 달러가 된다.

이 경계소득을 이용하면, 전술한 OECD의 분위별 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일 수 있다. 그림 9는 전술한 세 지표(D5/D1, D9/D5, D9/D1)에 대해 양자를 비교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OECD에 비해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고 있는 본고의 수치가 모두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D5/D1의 경우 차이가 큰 것은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OECD 통계에 비해 part time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소득세 자료에서 분모인 D1의 값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D5/D1에 비해 D9/D5에서 양자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중위소득(D5) 이상의 구간에서는 part time 근로자가 크게 줄어 두 통계의 대상 근로자가 근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갭이 적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D9/D1은 앞의 두 지표인 D5/D1와 D9/D5의 곱이기 때문에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그림 9 근로소득의 분위별 비율의 비교: OECD vs. 소득세 자료



자료: 표 1; OECD, "do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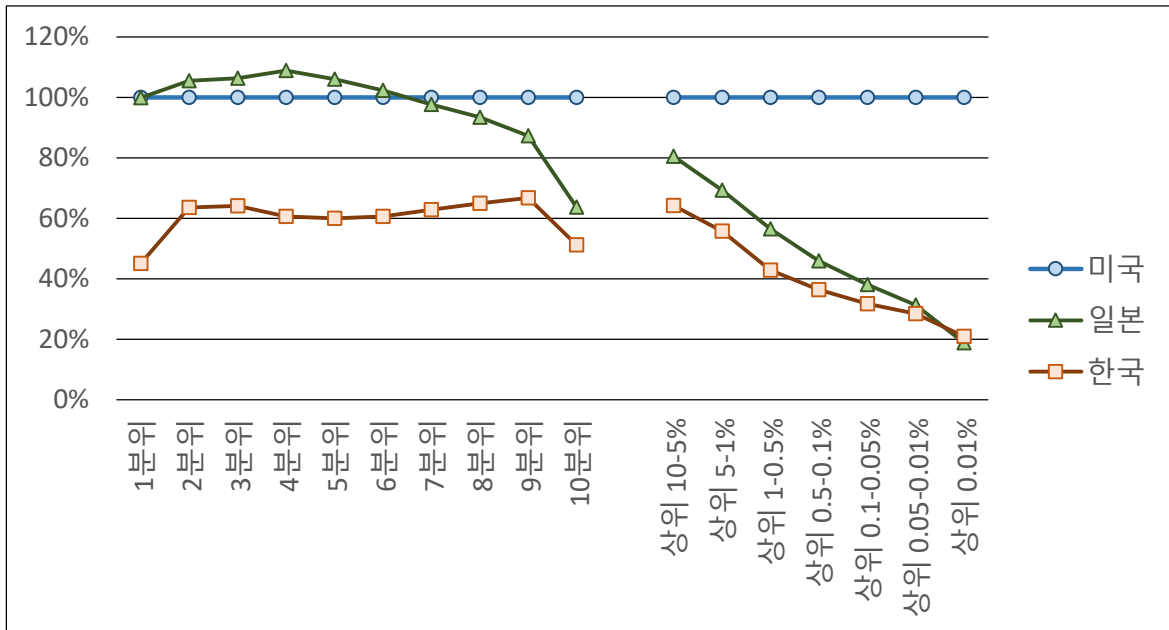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OECD 통계에서는 D5/D1이 가장 낮았는데, 소득세 통계에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것은 OECD 자료에서 일본의 근로자의 범위가 10인 이상 사업체로 다른 나라보다 더 좁게 한정되었다가 소득세 자료에서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어 D1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어느 지표에서나 두 통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D1이 연소득 438만원에 불과하여 그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D9/D5에서도 차이가 컸는데, 그것은 한국의 사업체조사가 상위 소득자를 불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전술한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세 나라의 분위별 평균소득의 수준을 비교해보자.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일본의 소득을 환율로 환산하기로 한다. 달러로 환산된 한국, 일본, 미국의 전체 평균소득은 2013년에 각각 27,157 달러, 39,094 달러, 46,172 달러가 되며, 한국과 일본의 평균소득은 미국의 58.8%와 84.7%의 수준에 해당한다¹⁶. 그림 10은 각 분위별로 미국을 100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 경우 분위별 격차는 전체 평균의 격차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0분위에서 대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최상위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한국이나 일본의 상위 0.01%의 소득은 미국에 비해 20%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분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상위 10-5%에서는 일본의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최상위로 갈수록 격차가 점점 좁혀져 상위 0.01%로 가면 역전되었음

¹⁶ 이에 대해 중위소득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60.2%와 104.3%로 나온다. 평균소득에서 일본은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중위소득에서는 역전하였는데, 일본의 소득불평등이 미국보다 크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이 평균소득보다 다소 높아지는데 그쳤다.

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분위별 근로소득의 국제비교(2013년, 미국=100): 환율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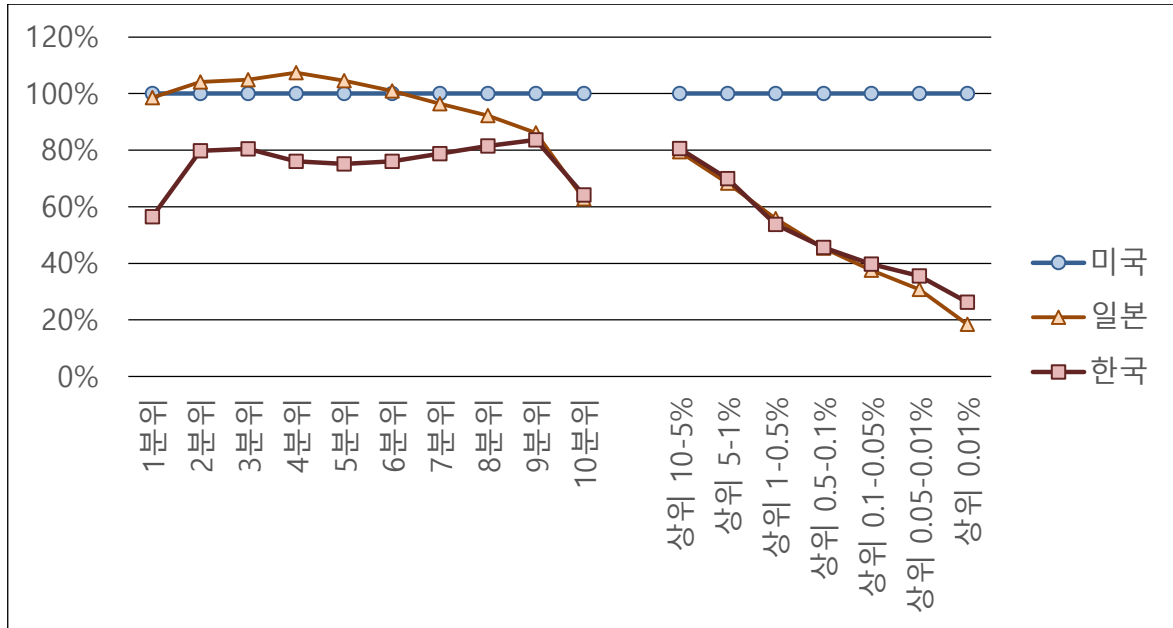
주: 2013년의 한국과 일본의 대미 환율은 각각 달러당 1,094.9원과 97.6엔이다.

자료: 표 1.

9분위 이하로 오면 일본과 미국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6분위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의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최상위 그룹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중하위 그룹에서는 일본의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오히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2-9분위에서 대체로 미국의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면 미국의 소득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은 4분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그 이상의 분위로 갈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한국이 1분위에서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다른 분위와 양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가간 소득수준을 환율로 환산할 경우 서비스를 포함한 비 교역재의 물가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환율보다는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는 것이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PPP로 환산할 경우 한국, 일본, 미국의 소득수준은 각각 34,041 달러, 38,570 달러, 46,172 달러로 되며, 한국과 일본의 전체 평균소득은 각각 미국의 73.7%와 83.5%의 수준에 해당된다. 일본은 환율과 PPP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국내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PPP 환산 소득이 환율 환산에 비해 25% 정도 높아졌다. 그림 11은 환율 대신에 PPP로 환산한 결과를 그림 10과 같은 요령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과의 소득 격차의 양상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분위별 근로소득의 국제비교(2013년, 미국=100): PPP 환산



주: 2013년의 한국과 일본의 PPP는 각각 달러당 873.5원과 98.9엔이다.

자료: 표 1.

세 나라의 분위별 소득의 특징을 요약하면, 최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비해 전체 평균소득은 낮지만 중하위 구간에서는 미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에 비해 일본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9-10분위에서는 소득의 수준이나 분포의 유형이 일본에 거의 근접하였음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중하위 구간에서는 뒤쳐져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1분위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국과 유사한 소득분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소득분배의 실태를 소득세 자료로 접근할 경우 종래 널리 이용되어 왔던 가계조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 많다. 가계조사는 표본조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상층으로 갈수록 소득의 파악률이 크게 떨어진다는(김낙년·김종일 2013). 이에 비해 소득세 자료는 상층 소득자의 전수가 집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는 물론 상위 0.01%까지 세분하여 소득의 비중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까지 포함하여 매우 장기에 걸쳐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알 수 있다.

해방 전까지 포함한 소득집중도의 장기추이를 보면, U자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방 전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았던 사회였고, 해방 후 고도성장기에는 소득집중도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저 성장기에 들어와서 다시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소득집중도가 심한 미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보다는 높아져서 두 유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가속되어 왔던 불평등 확대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의 상위 10%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 추이를 보여줄 수 있지만, 하위 90%를 포함한 전체의 소득분포를 알기 어렵다. 여기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2013년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전체 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환율로 환산할 경우 각각 미국의 59%와 85%(PPP로 환산할 경우 각각 74%와 84%) 수준으로 나왔다.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각각 미국의 60%와 104%로 나와 일본의 경우는 역전되고 있다.

이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최상층으로 갈수록 미국의 소득 우위가 압도적인 반면 중하위 분위에서는 거꾸로 일본이 미국을 능가하여 일본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1분위와 10분위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지만, 2-9분위에서 미국의 60%(PPP기준에서는 80%)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온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9-10분위에서는 일본에 거의 근접하였지만, 그 아래 분위에서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히 1분위의 과소 소득이 문제가 되지만, 일본 기준으로는 중하위 계층 전반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 남겨진 과제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2013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10분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이전 시기로 소급해 보는 것이다. 197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과 일본의 1/10 또는 1/5에도 미치지 못하였음(Kim and Park 2017)을 감안하면 그 사이 급속한 catch up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술한 세 나라의 근로소득 분포가 어떤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자료상황인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소득세 자료에는 과세 미달자가 빠져 있으며, 미국은 개인 기준이 아니라 부부의 경우 합산한 tax unit 기준의 통계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비교 가능한 소득분포를 추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둘째, 종래 근로소득 분포에 관한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같은 사업체조사에 크게 의거해 왔다. 그렇지만 사업체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 시기 또는 국가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다르며, 그에 따라 소득분포 또한 적지 않게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하위 소득구간 뿐만 아니라 상위 소득구간에서도 조사의 누락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종래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임금분포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소득세 자료에 의거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마이크로 데이터), 각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国税庁, 『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結果』(<https://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tokei.htm>).
- 김낙년(2012a),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pp. 75-114
- 김낙년(2012b),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18(2), pp. 125-158.
- 김낙년(2014a),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이영훈 편,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출판문화원.
- 김낙년(2014b),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재정학연구』 7(2), pp. 59-93.
- 김낙년(2016),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2(3), pp. 147-196.
- 김낙년·김종일(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pp. 1-64.
- 박명호(2014), 「소득집중도 추이 분석」, 박명호 전병목,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정책연구원.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통계청, KOSIS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
-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
- 홍민기(2015a), 「최상위 소득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 『경제발전연구』 21(4), pp. 1-34.
- 홍민기(2015b), 「최상위 임금 비중의 장기추세(1958-2013)」, 『산업노동연구』 21(1), pp. 191-220.
-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http://www.mhlw.go.jp/toukei/list/chinginkouzou.html>)
- Atkinson, A.(2005), "Top Incomes in the UK over the 20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1), pp. 3-71.
-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68(2), pp. 325-343.
-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https://www.bls.gov/cps/>).
- Internal Revenue Service, "SOI Tax Statistics"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information-return-form-w2-statistics>).
- Kim, Nak Nyeon and Jongil Kim(2014),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WID.world Working Paper 2014/2.
- Kim, Nak Nyeon and Kijoo Park(2017), "The Origins of the East Asian Incongruities in the Maddison Project Database",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 Moriguchi, C. and E. Saez(2008), "The Evolution of Income Concentration in Japan: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1886-2005",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4), pp. 713-734.
- OECD, "do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http://stats.oecd.org>)
- The World Wealth and Incomes Database, (<http://wid.world>).

<부표 1> 근로소득의 집중도와 경계소득 및 평균소득

	소득 비중(%)				경계소득(천 원)				평균소득(천 원)			
	P99.99-100	P99.9-100	P99-100	P90-100	P99.99	P99.9	P99	P90	P99.99-100	P99.9-100	P99-100	P90-100
1963	0.29	1.24	6.15	32.49	41,439	29,269	11,386	6,194	80,320	34,600	17,117	9,048
1964	0.15	0.85	4.88	24.92	32,071	18,146	10,962	5,209	41,839	24,377	14,045	7,173
1965	0.15	0.87	4.75	24.82	33,519	18,563	10,619	5,170	43,162	25,417	13,822	7,221
1966	0.27	1.00	4.67	24.97	35,118	21,200	10,561	5,695	88,327	33,030	15,406	8,240
1967	0.26	0.99	4.67	23.90	46,858	24,017	11,839	6,760	99,135	37,217	17,526	8,962
1968	0.33	1.16	5.18	26.91	59,630	25,853	13,847	8,043	127,343	45,227	20,185	10,495
1969	0.30	1.03	5.04	27.03	58,774	25,020	15,754	9,021	131,706	44,849	22,001	11,802
1970	0.24	1.03	5.21	24.64	61,425	30,582	17,345	7,634	108,880	46,812	23,701	11,216
1971	0.32	1.11	5.15	25.15	47,148	34,182	16,998	7,901	152,232	52,079	24,250	11,831
1972	0.26	0.96	4.73	24.23	50,852	31,720	15,980	8,484	131,395	48,266	23,726	12,150
1973	0.20	0.91	4.35	21.09	79,613	36,953	18,355	8,669	119,419	55,429	26,384	12,798
1974	0.24	1.11	5.27	23.76	98,614	45,773	19,768	9,374	147,921	68,659	32,434	14,633
1975	0.27	1.25	6.35	24.40	111,055	51,547	22,311	9,213	166,583	77,321	39,296	15,103
1976	0.22	1.04	5.75	23.17	103,239	47,919	23,013	9,882	154,859	71,879	39,865	16,079
1977	0.23	1.05	5.29	23.32	114,046	53,516	28,514	10,589	171,070	80,019	40,116	17,686
1978	0.27	1.24	6.00	27.52	153,581	71,286	34,677	15,089	230,371	106,929	51,871	23,804
1979	0.43	1.22	5.61	26.76	153,772	77,352	36,858	15,458	408,177	115,849	53,064	25,321
1980	0.20	0.94	5.26	25.71	123,718	56,884	33,620	15,603	186,730	85,855	48,102	23,503
1981	0.25	1.06	5.29	25.45	113,632	61,451	32,819	14,920	223,372	96,638	48,208	23,204
1982	0.23	1.02	5.41	26.59	118,247	69,676	35,140	16,817	220,488	97,441	51,625	25,363
1983	0.18	0.96	5.11	25.28	141,180	76,971	37,961	18,343	188,720	102,889	54,734	27,096
1984	0.18	0.87	5.04	24.44	141,716	77,657	38,497	18,740	200,024	98,648	57,053	27,687
1985	0.37	1.23	5.26	25.12	171,742	77,935	40,258	19,270	429,300	141,748	60,790	29,039
1995	0.46	1.27	4.90	25.74	465,287	128,855	72,657	43,285	1,042,241	286,942	110,453	58,040
1996	0.25	0.98	4.86	25.66	347,137	140,860	85,160	52,019	588,020	234,411	116,669	61,590
1997	0.18	0.89	4.94	26.67	297,068	145,924	91,459	53,792	440,075	211,950	117,743	63,507
1998	0.34	1.13	5.02	26.05	392,603	138,343	80,786	50,455	769,623	258,621	115,074	59,721
1999	0.34	1.33	5.78	27.86	461,849	189,263	92,209	54,710	800,313	308,997	134,735	64,911
2000	0.37	1.40	6.03	28.50	512,349	203,636	101,844	57,602	892,856	340,301	146,243	69,058
2001	0.40	1.40	5.83	28.28	531,486	196,132	102,021	57,585	986,251	347,573	144,325	70,012
2002	0.40	1.44	6.10	29.50	568,018	218,279	111,680	61,742	1,027,019	370,552	156,792	75,828
2003	0.36	1.34	5.80	28.86	545,152	217,408	112,775	62,297	953,631	357,735	154,319	76,799
2004	0.41	1.45	6.11	31.80	633,224	230,262	109,236	63,448	1,119,280	394,171	165,806	86,253
2005	0.56	1.75	6.47	32.01	764,516	235,935	113,269	63,187	1,555,681	482,407	178,427	88,243
2006	0.61	1.89	6.86	33.78	849,409	266,349	133,502	70,783	1,682,056	523,731	190,584	93,846
2007	0.78	2.17	7.24	33.57	988,046	277,530	127,854	65,567	2,207,887	611,941	204,429	94,738
2008	0.70	2.13	7.26	33.77	954,957	290,042	126,855	64,604	1,965,181	593,839	202,561	94,201
2009	0.69	2.08	7.15	33.23	886,374	277,178	123,301	63,290	1,901,426	575,123	197,962	92,036
2010	0.68	2.14	7.38	33.89	955,788	298,683	132,464	63,415	1,894,187	598,191	206,578	94,876
2011	0.67	2.16	7.31	33.63	1,010,910	308,965	136,914	63,455	1,923,610	616,000	208,791	96,097
2012	0.63	2.05	7.08	32.96	974,762	312,278	138,846	64,072	1,861,991	605,185	209,095	97,301
2013	0.62	2.04	7.02	32.67	981,234	321,470	141,737	64,832	1,874,366	617,710	212,968	99,085
2014	0.60	2.02	6.94	32.31	1,006,546	329,526	143,528	65,101	1,869,148	626,193	215,113	100,119
2015	0.57	1.97	6.94	32.45	996,880	340,046	147,008	66,367	1,799,636	625,238	219,818	102,773

주: 1) 소득금액은 2010년 불변가격이다.

2) 예컨대 P99.99-100은 상위 0.01%에 든 근로자의 평균소득 또는 소득비중을 뜻한다.

3) P99.99는 상위 0.01%에 들기 위한 경계소득(threshold income)을 뜻한다.

<부표 2> 전체소득의 집중도와 경계소득 및 평균소득

	소득 비중(%)				경계소득(천 원)				평균소득(천 원)			
	P99.99-100	P99.9-100	P99-100	P90-100	P99.99	P99.9	P99	P90	P99.99-100	P99.9-100	P99-100	P90-100
1933	2.82	8.37	21.13		203,300	51,446	11,611		394,282	116,943	29,507	
1934	2.81	8.35	20.14		224,548	52,434	10,516		390,796	116,254	28,046	
1935	2.54	7.58	18.44		224,003	53,354	10,637		395,183	117,741	28,642	
1936	2.48	7.37	18.00		204,621	50,292	10,201		379,544	112,690	27,541	
1937	2.34	7.11	16.77		253,082	59,625	11,064		423,280	128,441	30,296	
1938	3.00	7.75	17.80		245,601	57,623	11,448		527,169	136,342	31,309	
1939	2.90	7.55	17.21		224,718	50,607	9,622		444,932	116,034	26,442	
1940	2.85	7.42	17.02		268,515	59,543	11,235		520,352	135,689	31,127	
1979	0.86	2.05	7.15	26.97	147,720	65,854	27,947	9,466	562,771	134,991	46,999	17,725
1980	0.71	1.98	7.45	28.71	144,598	54,600	25,822	8,434	408,764	113,655	42,699	16,461
1981	0.59	1.88	7.13	28.57	141,839	58,605	24,806	9,288	341,515	108,254	40,962	16,419
1982	0.53	1.78	7.27	29.68	148,975	59,985	27,082	9,584	319,539	106,497	43,435	17,727
1983	0.47	1.78	7.44	30.11	163,254	68,498	29,049	9,897	295,084	112,633	47,166	19,087
1984	0.55	1.80	7.34	29.16	180,097	71,655	31,336	10,185	383,820	125,272	51,127	20,308
1985	0.64	1.91	7.17	28.89	193,432	71,207	31,547	11,282	470,796	141,068	52,846	21,295
1995	0.68	2.01	7.03	29.84	539,879	159,522	65,177	29,842	1,067,896	315,089	110,315	46,841
1996	0.74	2.16	7.45	33.44	590,717	183,502	72,178	42,170	1,236,045	360,834	124,650	55,958
1997	0.75	2.21	7.73	34.45	621,478	193,381	77,039	43,422	1,260,200	370,161	129,398	57,635
1998	0.58	1.83	6.85	32.73	492,460	151,826	65,801	39,460	916,097	287,343	107,391	51,289
1999	0.74	2.16	7.76	34.42	534,049	179,592	74,397	41,137	1,181,702	343,751	123,788	54,879
2000	0.85	2.37	8.24	35.61	628,263	198,586	84,264	44,087	1,427,162	397,944	138,517	59,879
2001	0.96	2.59	8.59	36.40	707,007	210,234	86,544	43,731	1,604,148	434,080	144,077	61,057
2002	1.06	2.77	9.16	37.98	764,658	230,199	95,757	44,623	1,803,500	472,801	156,047	64,721
2003	1.10	2.84	9.21	38.64	792,591	233,939	97,431	45,055	1,871,723	484,318	157,190	65,960
2004	1.22	3.02	9.62	39.44	884,074	247,089	102,850	41,608	2,114,904	524,969	166,966	68,467
2005	1.35	3.37	9.96	37.76	948,759	239,551	98,238	37,593	2,403,814	598,699	177,069	67,144
2006	1.41	3.59	10.75	41.81	1,051,898	273,517	110,168	46,408	2,575,249	654,927	196,138	76,295
2007	1.61	3.99	11.27	42.35	1,187,470	297,680	106,823	42,902	2,984,595	741,111	209,197	78,607
2008	1.58	4.00	11.38	42.89	1,166,587	300,630	108,014	41,670	2,870,800	727,955	207,036	78,035
2009	1.55	3.95	11.31	42.52	1,135,741	300,509	106,680	39,956	2,795,512	713,353	204,221	76,768
2010	1.64	4.17	11.72	43.13	1,228,022	315,637	116,378	40,172	3,036,570	771,452	216,823	79,818
2011	1.65	4.33	12.00	43.32	1,312,354	341,996	111,432	40,182	3,121,290	819,687	226,831	81,912
2012	1.59	4.17	11.73	43.04	1,289,179	341,543	114,592	40,619	3,065,846	806,816	226,885	83,250
2013	1.52	4.07	11.63	42.74	1,295,308	351,768	119,904	48,967	3,020,514	811,775	231,715	85,166
2014	1.51	4.12	11.77	42.81	1,330,560	367,424	124,651	48,809	3,056,018	833,666	238,246	86,669
2015	1.59	4.27	12.03	43.14	1,422,100	389,636	131,168	49,929	3,331,558	893,163	251,297	90,149

주: 부표 1과 동일.